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북한인권보고서의 작성·발간 및 공개 〉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22호)

2025.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현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9.
3. 회 부 일 : 2025. 9. 10.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일부로 하여금 매년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u>실태</u> 2. ~ 5. (생략) ② (생략)	제6조의2(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실시)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분석보고서(이하 “북한인권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발간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국회 보고) ① ----- ----- ----- -----. 1. ----- <u>실태(북한인권보고서를 포함한다)</u>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6조¹⁾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방안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개정안은 통일부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매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이하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려는 내용임.
-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해왔는데,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하여 오다가, 2023년과 2024년에는 정책 전환에 따라 축적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 형식의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였고, 최근에는 다시금 내부자료(Ⅲ급 비밀)로 생산·관리하고 공개 보고서는 발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가 작성한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보고

1) 「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의 공개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 규정함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지속적 관여와 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러한 공개 규정은 유엔 등 국제 인권 메커니즘(국제 인권이사회, UPR, COI 등)의 기준과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북한 내 실질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및 2차 자료 등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인권 실태를 매년 정부가 공개할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 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참고로, 통일부(북한인권기록센터)는 개정안에 대하여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실시, 국회 보고 등은 이미 현행 법률(제13조 및 제15조)에 근거하여 실시중이고, 실태조사 공개를 통한 공세·압박보다 북

한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69
